창원우체국 공고 제2023-12호

2023년도 제1회 창원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 채용 공고

창원우체국에서 우편물 수집과 배달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를 담당할 공무직 상시계약집배원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창원우체국장

1. 채용직종 : 상시계약집배원

채용직종	근무우체국명	채용인원	담당업무내용
상시계약집배원 (공무직)	창원우체국	2명	- 우편물 수집 및 배달 - 기타 부대업무

2.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비공무원 신분의 공무직 근로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우정직공무원 채용 시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 우대

나. 보 수: 기본연봉 약 26,000(천원) + 실적수당 등

○ 기본연봉: 기본급, 운전수당, 근속수당, 상시집배특별수당, 정액급식비

○ 기타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보로금, 경평상여금

○ 실적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등

다. 근무시간: **주 5일(화요일~토요일) 근무(매주 월요일 무급휴무) 기본**

○ 기관의 상황,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근무일을 월요일~금요일(매주 토요일 무급 휴일)로 변경할 수 있음

○ 1일 8시간 근무 (07:30~16:30 탄력적 운영,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라. 휴 가: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마. 집배업무 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 또는 화물용차량(탑차 또는 봉고)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자격

가.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나.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 성실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라.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은 제외) 이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단, 출·퇴근이 가능한 자)

마. 최종시험일(면접일) 현재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차량 및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바.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시험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측정

○ 체력 측정(2종목):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평가방법 및 기준표:【붙임6】

※ 실기시험(체력측정)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5. 응시서류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 수 기 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실기·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3. 11. 1.(수) ~ 11. 3.(금)	**11. 7.(화) 14:00 이후**	**11. 8.(수)**	**11. 8.(수) 15:00 이후**

가. 접수장소: 창원우체국 4층 지원과 (☎ 055-260-9807)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의 서식은
창원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641),
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http://postman.koreapost.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의 채용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주소 : (우편번호 51504)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57, 창원우체국 지원과
- 전자우편 접수 시: tax60005970@korea.kr
- 단, 점심시간(12:00~13:00)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접수(응시자는 접수 유무를 확인)

※ 전자우편 제출서류는 PDF 혹은 JPG파일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등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시계약집배원 응시원서 재중 』 표시 및 채용부서의 접수확인 답신이 없을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완료 여부 확인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표는 면접 당일 교부 예정(응시번호는 면접일전 개별 안내)

다. 실기·면접시험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라.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창원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이력서** 1부【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4】

마.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5】

바.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1부

○ 면허발급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도록 조회된 증명서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

사.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 이력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하여 발급

※ 각 서류는 공고일(2023. 10. 27.)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각 서류는 “기본인쇄”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모아찍기 / 양면인쇄 접수 불가)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창원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최종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라. 상시계약집배원은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3개월 이상 상근시)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1회한)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우체국 지원과(☎ 055-260-9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